### 「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7. 19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7. 24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7. 24(화)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)

- 브랜드가치의 상승으로 상표사용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 사용에 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,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,
  - 사용요율을 개정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막고 효율적·일관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우리군 브랜드(Happy700)의 상표사용 승인, 사용료 징수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.
  - 주요 내용을 보면
    - 상표사용 요율을 총매출액에 따라 2.5% 내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고,

- 상표사용승인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계약기간은 1년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현재 Happy700을 포함 22종, 129개류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군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음.
  - 다만, 우리군의 브랜드는 평창의 성격과 가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평창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이자 자존심인 만큼
  - 개인이나 특정업체(단체) 등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상표사용 승인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